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6. 3.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상정경과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 발의자	발의일자	심사경과
교육 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	제4442호	서지영의원	2024.9.30.	○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1차 교육위원회(2024.11.19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
	제11977호	김민전의원	2025.8.5.	○ 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3차 교육위원회(2025.9.23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 회부
	제16272호	박성준의원	2026.1.23.	○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(2026.2.19.)

나. 제432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 2. 26.)에서
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
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·조정하여 우
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다. 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육위원회(2026. 3. 10.)는 이상 3건

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.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현행법상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·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.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3 신설, 제45조제1항제7호)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3(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)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 (이하 이 조에서 “외국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 대학에 임용된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,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제1항제7호 중 “한다”를 “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제19조의3(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)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(이하 이 조에서 “외국대학”이라 한다)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,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45조(휴직기간 등)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6의2. (생략) 7. 제44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<u>한다</u>. 8. ~ 11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45조(휴직기간 등) ① ----- -----. 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----- -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. 8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